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·평가기록 세부 계획

학익여자고등학교(2023.3.2.(목))

관련: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-7062(2023.2.28.)

1 기본 원칙

-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·평가·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'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'(58~60쪽)에 따르며,
-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코로나19(제2급 감염병)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지침을 준수함
- ※ 적용 기간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

2 출결 처리

- (등교중지학생)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
-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*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, 대체학습(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교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)의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무관(출석인정결석 처리)
- ※ 등교중지 이외의 학생(가정학습, 해외 체류 학생 등)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'등교일'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
- (중병서류) 교사의 '출결 중병 대체자료'(서식1 참조) 활용
- ※ 출결 중병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'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,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'으로 한정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· 격리 해제 이후, 지속되는 '후유증'으로 결석 시에는 '질병 결석' 처리
유증상자* (기존: 의심증상자)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·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·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· * 의사의 진단서·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, 질병명·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·처방전도 가능 ·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불가 (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)
PCR 검사자 (예: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,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
- *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7판)' 이후에 주로 사용된 용어인 '유증상자'와 일치시킴. 의미 변동 없음
- 일제식 정기고사 시 '평가 기간의 유증상자'는 별도임
- ※ 등교중지 기준은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에 근거하며,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

- (기저질환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*이 있는 학생의 경우, 학교장의 사전 허가**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(별도 안내 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관계 없이 적용 가능)
- * 기저질환은 '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(질병관리청)' 참조
(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은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 참조)
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경우의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※ 보건복지부의 '장애복지카드'로는 기저질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,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
(장애복지카드 소지 학생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기저질환이 증빙될 경우에만 출석 인정 처리 가능)
- **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중병 갈음 가능

- (가정학습 일수) 가정학습은 **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·경계'의 경우에 한해** 학칙으로 정한 **교외체험학습 일수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승인(허가) 가능**

※ 2022학년도까지 적용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·경계'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**가정학습을 포함한 연 40일 이내 승인(허가) 가능 폐지**

-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개정사항

- 기간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**연 19일 이내로 학칙이 정한 범위**
- 내용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
- 운영 시 유의 사항
 -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
 - 전일 원격수업, 평가 기간 등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
 -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

- 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**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 가능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**
- **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**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**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** 처리 가능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 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		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
평가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'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' 사유이므로,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임의변경 불가	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임의변경 불가
증빙 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	

※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

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

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하며,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

※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증빙자료는 평가 기간과 일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함

※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 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에는 결석 종류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

3 학생평가

- (분리고사실) 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중지이나, 학교별 **지필평가(중간·기말고사)** 기간에 **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의 시험 응시 허용**

-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(KF94 권장), 타인과 접촉 최소화,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
※ '평가 기간의 유증상 학생'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으로, 이 학생이 평가 기간에 미응시할 경우 **인정점**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**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**하여야 함

- (인정점 부여) 코로나19 감염(유증상)으로 **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** 및 이에 따른 **인정점 부여**(인정비율 100%)

- (증빙서류) **의료기관**(선별진료소 포함)의 **검사결과서**(PCR 결과,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확인서, 진료확인서, 의사진단서, 소견서) **확인 필수**

-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**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** 그에 따른 **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**

-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**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***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**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**

*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

※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

※ **확진·유증상 학생이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할 경우 '과목별 선택 응시'를 제한하나, 불가피하게 증상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(미응시)할 경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***를 확인하여 인정비를 적용

→ 의료기관 증빙자료* 제출 시 100%, 미제출 시 80%

* 진료확인서, 의사진단서, 소견서

4 학생부 기록

- (작성 및 처리) 원격수업 운영 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,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
 - 다만,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**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** 활동을 기재 가능
- (고등학교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) '출결상황'의 '특기사항'에 '일괄 입력'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에 대해 해당 학급의 2023학년도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(입력예시: 원격수업일수 △△일)
 - ※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'학교(학급)의 원격수업 운영일수'를 입력하며, 위탁학생 또한 위탁 기관이 아닌 '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'를 입력함
 - ※ 원격수업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에도 "원격수업일수 0일"로 입력함
- 3학년은 대입전형자료 생성(수시·정시) 시 학생부 마감일(생성 기준일, 별도 안내)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후, 졸업 시 2023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 입력
- 단 전출입 재·편입학 등 학적 변동된 경우,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

① (전출입)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*

* (입력 예시) "원격수업일수 △△일(전출일까지)"(전출교에서 입력), "원격수업일수 △△일(전입일 이후)"(전입교에서 입력)

※ 학생 전출 시,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

② (재·편입학) 재·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(진급, 졸업,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)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*

* (입력 예시) 원격수업일수 △△일(학업중단 일까지), 원격수업일수 △△일(재입학/편입학/복학 이후)

※ 2022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3학년도 재·편입학한 경우, 학업중단 이전과 재·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(중복기간 미삭제)

③ (학업중단)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

서식1

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(교사용)

[학급 단위 기준]

◆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(2023.3.2.~31.)

번호	성명	날 짜															비고	학생확인 (서명)
	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	
1	김○○																3.6. 본인 확진	
2	안○○					②				⑧							3.2. 본인 PCR검사	
3	최○○										④	⑥					3.8. 유증상자	
중 략																		
25	길○○																해당없음	